

「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관리 및 병물 아리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의 견 서

(이영실 의원 대표 발의)

2024. 4.

서울아리수본부

-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입니다.
-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 번호 제1699호 「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·관리 및 병물아리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- 음수대는 같은 조례 제7조·제9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에 귀속되고, 위생관리 및 유지관리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.
- 그러나, 서울시 예산으로 설치된 음수대의 관리소홀이 발생하여도 서울시는 지도·감독에 한계가 있어,
- 수돗물의 음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음수대가 설치된 기관에 대한 지도·감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본 조례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합니다.
- 다만, 약 26,000대의 음수대는 서울시 전역 2,899개소에 설치되어 실질적인 관리 및 지도·감독에 한계가 있습니다.
- 따라서, ‘지도·감독을 하여야 한다’라는 의무규정보다 ‘지도·감독을 할 수 있다’라는 재량규정으로 수정하여 상징적으로 명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

아울러, 서울시 음용률 향상을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해 주시는
봉양순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
깊이 감사드립니다.

이상으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.